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51호 2016. 12. 16(금)

고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 - 179 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1
- 남원시 고시 제 2016 - 181 호 도로명 주소 고시 ----- 2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6 - 153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4
- 남원시 공고 제2016 - 1533호 개간대상지선정 공고 ----- 5
- 남원시 공고 제2016 - 153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6
- 남원시 공고 제2016 - 1544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고 -----7
- 남원시 공고 제2016 - 1553호 도로공고 -----16
- 남원시 공고 제2016 - 1556호 개간대상지선정 공고 -----17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 지정 변경 고시 폐지

남원시 고시 제2016-179호

도로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폐지

2016년 12월 16일

남원시장

직인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기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기존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24호선	25호선
노선명	평촌 ~ 풍촌	부절 ~ 평선
기점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345-5 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2069-1 도
종점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276-2 도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749 천
주요 통과지	남원터널	동남원 IC
총연장(킬로미터)	5.289km	5.541km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 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6-18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여 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16.

남 원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71-2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개별고시조서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620-6136~3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2.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남원시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조서(신규)

연번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71-2	전라북도 남원시 시묘길 43-66 (노암동)	20161205	20090123	고유지명을활용하여부여	
2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303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보덕길 101	20161206	20090123	고유지명을활용하여부여	
3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470-1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송리길 49-16	20161207	20090123	고유지명을활용하여부여	
4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529-5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산촌길 3	20161207	20110405	면명칭과마을명을병합부여	
5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1196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45-29	20161208	20090123	고유지명을활용하여부여	
6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110-1	전라북도 남원시 네마실5길 63 (향교동)	20161208	20090123	고유지명에일련번호부여	
7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524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만행산길 180-34	20161208	20090123	도로구간이'만행산'이위치하여부여	
8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970-5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서정길 35-2	20161208	20090123	고유지명을활용하여부여	
9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웅정리 889-5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독우물안길 138	20161212	20090123	고유지명에방향성을부여	
10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244-1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외평2길 17	20161213	20090123	고유지명에일련번호부여	
11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389, 388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광촌아랫길 48-36	20161213	20090123	고유지명에방향성을부여	
12	부여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460, 461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황치길 32	20161215	20090123	고유지명을활용하여부여	

□ 남원시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조서(분할)

연번	구분	분할전 도로명주소	분할후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1	분할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2245 (식정동)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2245 (식정동)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1-26	20110729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2245-1 (식정동)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1-26	20161213	

□ 남원시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조서(폐지)

연번	구분	도로명주소	지번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폐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02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266-14	20161215	멸실	

남원시공고 제2016-153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남 원 시



□ 공인 신조 등록 [금 동]

- 1. 공인 등록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 2. 공인 등록 일 : 2016. 12. 13.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금동장인 인증기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금 동

□ 공인 폐기 [금 동]

- 1. 공인 폐기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인증기 마모)
- 2. 공인 폐 기 일 : 2016. 12. 13.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 원 시 금동장인 인증기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금 동

남원시 공고 제2016 - 1533호

공 고 (안)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 간
- 2.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적 (㎡)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박**	김제시 검산택**길 ** ***동 ***호	남원	송동	송상	산119- 4	임야	10,389	4,990

- 3. 목 적 : 개 전
- 4. 사업예정기간 : 2017. 01. . ~ 2018. 01. 30.
- 5. 열 략 장 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업시설) (☎ 063-620-6390)

남원시공고 제2016-153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남 원 시



□ 공인 신조 등록 [여성가족과]

- 1. 공인 등록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등록
- 2. 공인 등록일 : 2016. 12. 13.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양성 평 등 기 금 운 용 관 인	2.1cm×2.1cm 전서체	목재		여성가족과
등록	남원시양성 평 등 기 금 출 납 원 인	1.8cm×1.8cm 전서체	목재		여성가족과

남원시 공고 제2016 - 1544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항과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 설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함

나. 위원회 기능 (안 제4조)

-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예외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안 제4조, 안 제5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라.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신설 (안 제6조의2)

- 위원의 자격기준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기획실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남원시 의회 의원,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제1항 중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을 “다음”으로, “대하여 시장의”를 “대하여 심의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시 개최하고”를 “수립, 재정투자사업심사, 지방재정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가”를 “예산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 ----- 필요한 ----- -----.</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p> <p>③위원은 <u>관련업무 국장, 실·과장과 시의회 의원 및 지역인사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② -----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남원시 의회 의원,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p>	<p>제3조(임무) ① ----- 위원회-----</p>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수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원중 관련업무 국장,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제4조(기능) ----- 다음 -----

- 대하여 심의 및 -----.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

는 2년으로 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생략)

②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략)

<신설>

제7조(투자심사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중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

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립, 재정투자사업심사, 지방재정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

③ -----
----- 해당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투자심사위원회) <삭제>

<삭제>

방재정계핵심위원회 위원장
이 겸임하고, 위원은 동위원회
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③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및 투자심
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운
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및 투자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 예산담당이 -----.
② -----
----- 운영 -----
-----.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
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553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6-3 1	남원시 신촌동 129(전)	정*애	2016-건축과- 신축신고-480	29.6	5	148	남 원 시 신 촌 동 산 7-2	148	정*애

남원시 공고 제2016 - 1556호

공 고 (안)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16.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 간
- 2.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적 (m ²)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조**	남원시 조산동 요천로 **** * **** **	남원	사매	계수	산54	임야	34,847	4,950

- 3. 목 적 : 개 전
- 4. 사업예정기간 : 2017. 02. . ~ 2018. 01. 30.
- 5. 열 람 장 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업시설) (☎ 063-620-6390)